

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85호 1998. 6. 12

주 요 내 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용연수가 80 퍼센트 이상 경과된 시설을 개체하는 투자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모든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이 1998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1999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시행하려는 것임.

주택회보